공 개

의안번호	제 205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7. 19. (제 14 차)

의결사항

㈜신한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7. 19.

1. 의결주문

㈜신한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한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다음의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20조에 따라 ㈜신한은행 업무의 일부(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 업무 및 사모집합투자증권 매수방식 신탁운용계약 신규 업무)를 정지(3월)하고자 함

- 다 음 -

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1)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31차 제재심의위원회(2022.11.10.) 심의필

○ 제8차, 제11차, 제14차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2023.4.20, 6.1, 7.13.) 심의필

<별지>

㈜신한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업무의 일부 정지(3월)

*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중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신규업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매수방식 신탁운용계약 체결 신규업무

** 2023.7.19.부터 3개월 간

- 조치사유 : 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⑴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 법적근거 : 舊「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舊「자본시장법」 제420조 제3항, [별표1] 제47호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2. 조치사유

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⑴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은행 ☏☏☏☏부 및 ☆☆본부는 ○○○○○ ○○ ○○○ 펀드 등 6종 사모펀드*를 출시하여 판매토록 하는 과정에서 아래 ㈎~㈐와 같이 중요사항이 누락 또는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권유 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20xx.x월~ 20xx.x월 기간 중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판매금액: 3,572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① ○○○○○ ○○ ○○○ 펀드, ② ◎◎ ◎◎◎◎ 펀드, ③ ◇◇ ◇◇◇◇ 펀드, ④ □□□□ □□□□ 펀드, ⑤ △△△△ △△△△ 신탁, ⑥ ▽▽ ▽▽▽▽ 펀드

㈎ ○○○○○ ○○ ○○○ **펀드**

□ 신한은행 ☏☏☏☏부는 ○○○○○ ○○ ○○○ 펀드를 출시하면서, ①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 주체** 및 **관련 투자위험**, ② **차주**의 **높은 신용위험**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함으로써,

○ 20xx.x.xx.~ 20xx.x.xx. 기간 중 ○○○○○ ○○ 부동산 펀드(이하 '상반기·하반기펀드') 총 242건(판매금액: 947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①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 주체 및 관련 투자 위험 설명 누락 : 상반기 펀드

□ ◁◁ 부동산 담보부 대출채권 연계자산에 투자하는 특성상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담보권 직접 행사 가능 여부 및 관련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 상품제안서상 '구조화채권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통해 그 자체로는 담보권이 없는 채권을 매입하며 담보권 행사 주체가 ♤♤♤♤♤자산운용이 설립한 운용사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은 직접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리금 수취권으로 담보권 행사주체는 대출업체이고 담보권 행사 등에 있어서 대출업체와 펀드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하여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펀드가 직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해 상환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오인케하였음

② 차주의 높은 신용위험 설명 누락: 상반기 및 하반기 펀드

□ ◁◁ 부동산개발업자의 대출채권 연계자산에 투자하는 특성상 차주의 신용위험은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 상반기 펀드의 경우, 상품제안서상 ▷▷ 플랫폼 차주의 대출금리가 Libor + 6~12%로 높은 수준이고, ♡♡♡ 플랫폼의 경우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심사 강화로 대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xx.x.x. ♤♤♤♤♤자산운용으로부터 제공받은 20xx.xx월말 기준 SPC 운용보고서상 ♧♧♧ 플랫폼의 부실(Default 발생) 자산비율이 13.7%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차주의 신용도가 불확실함을 알 수 있었으며

- 하반기 펀드의 경우에도 상품제안서상 ◉◉ 플랫폼 차주의 평균 대출금리가 10.7%로 높은 수준이며, 20xx.x.x., 20xx.x.x. ♤♤♤♤♤자산운용으로부터 제공받은 운용사의 운용보고서상 ◉◉ 플랫폼 편입 자산의 90일 이상 연체 및 원리금 미상환 자산비율이 20xx.x월말 3.0%, 20xx.x월말 5.4%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차주의 신용도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차주의 높은 신용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

㈏ ◎◎ ◎◎◎◎ ◎◎

□ 신한은행 ☏☏☏☏부는 ◎◎ ◎◎◎◎ 펀드를 출시하면서, ① **후순위채권 구조, 분배순위 등 기초자산의 특성 및 투자위험이 누락**되고, ② **만기(상환) 시점 및 회수가능성이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함으로써

○ 20xx.x.xx.~x.xx. 기간 중 ◎◎ ◎◎◎◎ 펀드 12건(판매금액: 101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① 후순위채권 구조, 분배순위 등 기초자산의 특성 및 투자위험 설명 누락

□ ◎◎ ◎◎◎◎ 펀드는 메자닌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조달한 ABL에 간접 투자하는 펀드로서, 메자닌 대출채권의 구조 및 위험과 청산 시 회수 금액의 분배 방식은 투자판단의 중요사항임에도

○ 메자닌 대출채권 투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모기지 대출채권 투자와 구조가 다르고, 모기지채권 투자에 비하여 유동성 위험,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등이 증대되며, 차주 부도 등으로 인한 청산 시 회수 금액이 모기지 대주에게 우선 배분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

② 만기(상환) 시점 및 회수가능성 왜곡

□ 해외 소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본건 펀드의 특성상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 재무적 위험 등 투자 고유 위험이 존재하여 만기 시 투자대상 자산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중요사항임에도

○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LTV에만 기초하여 투자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상품제안서 및 PB게시판 안내에서 본건 투자대상 관련 자산(ABL, 메자닌대출 등)의 만기가 1회 또는 2회 연장 후 상환이 확실시되는 것처럼 오인케하는 내용을 사용하여 투자금 회수 관련 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음

㈐ ◇◇ ◇◇◇◇ 펀드

□ 신한은행 ☏☏☏☏부는 ◇◇ ◇◇◇◇ 펀드를 출시하면서, ① **대출 회수 가능성 및 관련 투자위험**과 ② **부동산 담보 비율(CLTV) 변경 가능성 및 관련 투자위험이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함으로써

○ 20xx.x.xx.~20xx.x.xx. 기간 중 ◇◇ ◇◇◇◇ 펀드 45건(판매금액: 106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① 대출 회수 가능성 및 이에 따른 투자위험 왜곡

□ ◇◇ ◇◇◇◇ 펀드는 ▷▷ 부동산 담보 대출회사에 간접 투자하는 형태로, 상품제안서상 해당 담보대출회사의 주 고객은 사업 성장을 위해 단기자금이 필요한 중·소상공인이고 대출 이자율은 연 30~107%(평균 69%, 연 환산 기준)에 이르며 대출 취급 대상에 대한 최소 신용등급의 제한도 없어 해당 담보대출회사가 실행한 대출이 부실화되거나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상존하고, 이는 펀드의 가치 및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임에도

○ 상품의 안정성만을 강조한 내용을 투자포인트로 삼아 영업점에 공유하고, “과거 손실율(1% 이하)”, “정상채권만 취급(Performing Loan)“ 등 대출회사가 실행한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것이 확실하다고 투자자를 오인케하여 중요 투자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음

② 부동산 담보 비율(CLTV) 변경 가능성 및 투자위험 왜곡

□ 본건 펀드가 투자한 대출의 부실 발생 시 담보로 활용하게 되는 비율(CLTV)에 관한 내용은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중요사항으로, 부동산 담보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제시한 CLTV 비율이 변경되면 담보 비율에 따른 안전장치(buffer) 수준이 달라져 투자금 상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고

○ 동일한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의 CLTV 비율이 한달만에 변경(58% →63%)되었다는 사실을 동 펀드 출시 이전에 인지하였음에도

- CLTV 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투자위험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활용토록 함에 따라 중요 투자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음

㈑ □□□□ □□□□ 펀드

□ 신한은행 ☏☏☏☏부는 □□□□ □□□□ 펀드를 출시하면서, ① **무역신용보험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 및 지급 시점**, ② **Buyer의 결제 안정성**, ③ **Seller의 지급보증 관련 사항 등이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함으로써

○ 20xx.x.xx.~ 20xx.x.xx. 기간 중 □□□□ □□□□ 펀드 총 390건(판매금액: 1,814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① 무역신용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 및 지급 시점 왜곡

□ 무역금융 매출채권 유동화 펀드에서 투자금에 대한 무역신용보험 가입은 투자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판매 포인트임에도

○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 왜곡)** 보험의 각 면책조항(Exemption Clauses)마다 '해당 사항 없음' 또는 '확인 완료' 등 펀드 판매 시점에는 확인하기 곤란한 사실이 빨간 글씨로 확언·강조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아 보험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 면책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왜곡**하였음

○ **(보험금 지급시점 왜곡)** Seller의 의무사항에 '합당한 주의와 신중함을 발휘', '최선의 노력을 다함' 등 선언적인 내용들만 열거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사의 심사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보험금 지불기한에 'Invoice상 지급기일로부터 135일 이내'라고 단정적으로 기재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지연과 관련한 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음

② Buyer의 결제 안정성 왜곡

□ 펀드 판매 시점에는 Buyer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 이후 미회수 매출채권이 단 1건도 없을 정도로 선별된 Buyer들로 구성'이라고 기재되어 Buyer의 미결제 불확실성에 대해 검증된 것처럼 **단정적 판단**을 제시하였음

③ Seller의 지급보증 관련 왜곡 기재

□ ▣▣▣ ▣▣▣ 등 4개 펀드*의 경우 판매 시점에는 Seller가 확정되지 않아 지급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Seller가 지급을 보증', 'Seller의 지주회사, 주력회사 등이 중첩 보증 제공', '발생가능한 손실을 보전함'이라고 기재되어 Seller의 지급보증 불확실성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시하였음

* ▣▣▣ ▣▣▣, ◐◐◐ ◐◐◐, ▨▨▨ ▨▨▨, ▥▥▥ ▥▥▥

㈐ △△△ △△△△ 신탁

□ 신한은행 ☆☆본부는 △△△△ △△△△ 신탁을 출시하면서, **무역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이 누락 및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함으로써

○ 20xx.x.xx.~20xx.x.xx. 기간 중 △△△△ 펀드 총 90건(판매금액: 475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 신탁에서 투자금에 대한 무역신용보험 가입은 매출채권 회수가 문제될 경우 투자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사항인데도, 보험금 지급 면책조건 및 보험구조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 **(보험금 미지급 위험성 누락 및 왜곡)** 상품제안서상 보험금 지급 면책조건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고,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사 100% 보장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추구"라고 기재되어 투자의 안정성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으며

○ **(부보 범위 왜곡)** 부보 범위가 실제로는 매출채권 액면금액의 90% 수준에 불과한데도, 매출채권 전부에 대하여 보험이 가입된 것처럼 설명하였으며

○ **(보험구조 왜곡)** 보험금 청구권자는 보험가입자인 ▨▨▨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제안서에 보험 계약 당사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마치 펀드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케 하는 등 무역신용보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음

㈐ ▽▽ ▽▽▽▽ 펀드

□ 신한은행 ☏☏☏☏부는 ▽▽ ▽▽▽▽ 펀드를 출시하면서, **투자자금 회수 관련 위험이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함으로써

○ 20xx.x.xx.~20xx.x.xx. 기간 중 ▽▽ ▽▽▽▽ 펀드 41건(금액: 129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헬스케어 매출채권 투자자금 회수 관련 위험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며

○ 상품제안서상 ※※※※※ 국채 금리와 헬스케어 매출채권 매입시 평균 할인율의 차이를 감안할 때 ※※※※ 정부에서 비롯된 신용위험보다 헬스케어 매출채권 자체에서 비롯되는 고유위험의 규모가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지급주체인 지역보건기구이 매출채권 발생 원인 및 진위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기구가 해당 매출채권을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매출채권 대금이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 상품제안서에 투자포인트로 '※※※※ 국가 파산 등 재정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채무가 이행된다'고 강조하면서 '※※※※ 국채 신용등급이 BBB0'라고 언급하였고, 투자대상의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의 최종 채무자는 ※※※※ 정부 및 지방정부'라고 기재하면서 ※※※※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인 BBB라고 반복 제시하는 등 헬스케어 매출채권이 사실상 ※※※※ 국채에 준하는 수준의 위험이 내재된 상품인 것처럼 설명함에 따라 <u>중요 투자위험을 **왜곡하여 설명**</u>하였음

<붙임 1>

관 계 법 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46.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파악·서명 등을 통한 확인, 유지·관리 또는 확인 내용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7. 제47조에 따른 설명 또는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설명의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구조와 성격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금융위설치법 제37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업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감독원", "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원"은 각각 "금융위"로 본다.

③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결과 등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검사를 위탁한 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가. 삭 제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 영업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6) 위법·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 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이미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재한다.

1. 추가 발견된 위법·부당행위가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추가 발견된 위법·부당행위가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제재하였더라면 종전 제재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받았을 제재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별표 3> 금융업종별 ·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Ⅲ-5.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1. 제재대상

② (유형 2) 설명의무 불이행 (자본시장법 제47조,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제재기준

○ 불완전하게 판매된 금액 또는 건수 기준 중 중한 기준으로 제재

○ 기관제재시 투자권유대행인의 판매분을 포함 (투자권유대행인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가능)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판매금액·
건수</th><th colspan="3">제재양정</th></tr>
<tr><th>유형 1, 2</th><th>유형 3</th><th>유형 4</th></tr>
<tr><td rowspan="3">임
직
원</td><td>10억원 또는 50건 이상</td><td>문책경고
(감봉) 이상</td><td>직무정지
(정직) 이상</td><td>문책경고
(감봉) 이상</td></tr>
<tr><td>1억원 또는 5건 이상</td><td rowspan="2">주의적경고
(견책) 이하</td><td>문책경고
(감봉)</td><td rowspan="2">주의적경고
(견책) 이하</td></tr>
<tr><td>1억원 또는 5건 미만</td><td>주의적경고
(견책) 이하</td></tr>
<tr><td rowspan="2">기관</td><td>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td><td>기관경고 이상</td><td>기관경고 이상</td><td>기관경고 이상</td></tr>
<tr><td>50억원 또는 250건 이상</td><td>기관주의</td><td>기관주의</td><td>기관주의</td></tr>
</table>

주) 적립식으로 매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판매금액은 총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3. 가중 및 감경

○ 투자자 수, 손실규모, 금융투자상품 규모, 위반기간, 회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위법 판매행위가 경영방침 · 판매지시, 기관차원의 부당한 광고 및 자료 등에 기인한 경우, 기관 및 관련 행위자(광고문안 작성자 등) 등에 대해 조치하고 판매임직원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위법행위의 정도와 동기 등을 감안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불완전판매행위 방지를 위해 자체감사 및 교육,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관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기관에 대하여는 제재유형별 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제재할 수 있다.

○ 서로 관련 없는 다른 판매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되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보다 가중할 수 있다.

○ 동일한 판매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 투자설명서를 미교부 하였더라도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조직적·반복적인 불완전 판매행위 또는 제재대상 유형 1, 2, 4의 경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마목(1)~(5)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가중할 수 있다.

○ 투자자 손실 발생이 없는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은행검사1국
연 락 처	02-2100-2663	02-3145-7062